#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5 발의연월일: 2020. 9. 16.

발 의 자:인재근·소병훈·허 영

송갑석 · 기동민 · 김원이

최혜영 · 강선우 · 이해식

서영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호사선임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범죄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이외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신고 초기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를 해주어도 보호자가 변호사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으며, 현행 규정은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검사와 법원의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 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 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9조).

#### 법률 제 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은 형사 및 아 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할 수 있다"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9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 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 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
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
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
동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③ (생 략)

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 거물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 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 아동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 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 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 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u>선</u>
정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